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복기왕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5211
----------	-------

발의연월일 : 2025. 12. 12.

발 의 자 : 복기왕 · 최혁진 · 이상식
어기구 · 정준호 · 김영환
김남희 · 이강일 · 문진석
정태호 · 박수현 · 한병도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과도한 형벌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하여 안전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튜닝에 대해 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에 대하여 종전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안 제81조 등).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1조제19호 중 “튜닝을 한 자”를 “튜닝을 한 자.”로 하고, 같은 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84조제2항제3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84조제2항제3호의2를 제3호의3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제34조(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항목에 대하여 튜닝을 한 자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제81조제19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81조(벌칙) ----- ----- ----- -----.
1. ~ 18. (생 략)	1. ~ 18. (현행과 같음)
19. 제34조(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에 튜닝을 한 자 <단서 신설>	19. ----- ----- ----- -- 튜닝을 한 자. 다만, 제84조제2항제3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0. ~ 28. (생 략)	20. ~ 28. (현행과 같음)
제84조(과태료) ① (생 략)	제84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 ----- -----.
1. 삭 제	
1의2. ~ 3. (생 략)	1의2. ~ 3. (현행과 같음)
<신 설>	3의2. 제34조(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u>3의2.</u> (생 략) 4. ~ 6. (생 략) ③ ~ ⑥ (생 략)	<u>항목에 대하여 튜닝을 한 자</u> <u>3의3.</u> (현행 제3호의2와 같음) 4. ~ 6. (현행과 같음) ③ ~ ⑥ (현행과 같음)
---	--